

영등포구의회  
제17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 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3. 9. 9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234호로 2013년 8월 2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민간위탁운영의 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완함으로써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(제4조)

- 계약기간 연장 조항인“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”조항 삭제

나.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조항 신설(제4조)

- 수탁기관 선정기준·방법 등 명시(공개모집)
-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 규정 명시

(여성위원 40% 이상, 위원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)

다. 협약내용 공증이행 조항 신설(제4조)

라.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 보호 조항 신설(제6조)

#### 4. 참고사항

##### ○ 관계법령

-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, 제13조의2
- 「정신보건법 시행령」 제3조의2
- 「지역보건법」 제9조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6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
#### 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침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4조제3항에 수탁기관 선정시 “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,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”에서 “수탁기관 선정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”로 변경하여 위탁기간 연장조항을 삭제하였고
- 안 제4조제2항, 제4항, 제5항에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
  -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
  -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며
  -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%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고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7조에서는 30%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
  - 수탁자와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함.

- 안 제6조제5항에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
  -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.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6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참고로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설치·운영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시비 50%, 구비 50%로 충당되고 2013년도 사업예산으로 시비포함 5억 9,100만원이 편성되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음.

# 참 고 자 료

## 1 정신보건법

제13조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, 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발견·상담·진료·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·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·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간 연계체계 구축,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,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3.21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·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보건소 또는 국·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.

⑤ 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

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.

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, 시·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**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**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  
[전문개정 2004.1.29]

**제13조의2(정신보건센터의 설치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[제13조제1항](#)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·군·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·상담·진료·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[본조신설 2008.3.21]

## 2 정신보건법 시행령

**제3조의2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·단체)** [법 제13조제3항](#)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1. 정신보건시설

2. 「[고등교육법](#)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[전문개정 2009.3.18]

### 3 지역보건법

제9조(보건소의 업무)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국민건강증진·보건교육·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
2. 감염병의 예방·관리 및 진료
3.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
4. 노인보건사업
5.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
6.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
7. 의료기사·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
8.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
9. 농어촌등보건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
10.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
11.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
12. 가정·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
13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



14.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

15.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

16.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·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

**제24조(권한의 위임등)**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**대통령령이 정하는**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**대통령령이 정하는**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에게 위탁하거나, **의료법 제2조**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,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.

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.

1.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2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,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.

-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.
-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,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,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.